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윤기섭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84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5월 27일

발 의 자: 윤기섭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
김성준, 김영철, 김원중,
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
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
박 석, 박영한, 박춘선,
소영철, 유만희, 유정인,
이봉준, 임규호, 장태용,
최민규, 홍국표, 황철규
의원(27명)

1. 제안이유

- 공공자전거“따릉이”의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출 퇴근 시간대 자전거 쏠림현상 발생하고 있으나 배송인력 충원을 통한 인위적 재배치는 운영수지 관점에서 배송인력 무한정 확대 불가, 업무 효율에도 한계 존재함.
- 재배치 문제해결은 부분적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인 방식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.
- 과다 과소 대여소에서 따릉이 대여 반납 시 마일리지를 제공하여 시민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지속성을 담보하는 제도화가 필요

2. 주요내용

- 가.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5조제3항)
- 나.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상을 규정함(안 제15조제3항제1부터3호)

다. 시장이 인센티브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(안 제15조제4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 중 “지하철·버스 등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에게 마일리지 부여”를 “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상에게 마일리지”로,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지하철·버스 등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
2. 공공자전거 대여소 간 자전거 불균형 해소에 기여한 자
3. 그 밖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
- ④ 제3항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<u>지하철·버스 등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에게 마일리지 부여 등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5조(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<u>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상에게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지하철·버스 등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</u> 2. <u>공공자전거 대여소 간 자전거 불균형 해소에 기여한 자</u> 3. <u>그 밖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</u> <p>④ 제3항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조(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) 제3항을 개정함에 따라 공공자전거 대여소간 자전거 불균형 해소에 기여한 자 등에 추가로 제공 되는 마일리지만큼 요금 수입 감소가 발생함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제15조(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)

나. 전제

- 마일리지는 1회 100원, 일 최대 400원, 월 최대 5,000원 지급 가정
 - 2023년 하반기 공공자전거 대여소 간 자전거 불균형 해소를 위해 '티머니 GO'와 협업하여 수행한 시민참여 재배치 시범사업 결과를 기준으로 분석
 - 적립한 마일리지는 따릉이 이용권 구매에 전액 사용한다고 가정
- 시민참여 재배치 시범사업 '티머니 GO' 점유율 대비 마일리지 지급액을 기준으로 서울시 따릉이 플랫폼 전체로 확대할 경우 예상 지급액 산출
 - 전체 따릉이 대여 건수 중 '티머니 GO' 점유율은 7~12월 중 최저치인 12%로 산정
 - 시민참여 재배치 대상 대여소를 평일 출퇴근 220개소, 주말 오후 110개소로 전제
 - 시민참여 재배치 참여율은 날씨, 기온과 무관하게 일정하다고 가정
- 비용은 2025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(2025~2029년)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추계기간 : 시행일로부터 5년(2025년~2029년)

라. 방법

-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제공자료 활용

3. 비용추계의 결과

○ 총비용 = 686,913천원(연평균 137,383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지출	-		-	-	-	-	-	-
	소계(a)		-	-	-	-	-	-
수입	○ 제15조(자전거 이용자에게 대한 지원)		△137,383	△137,383	△137,383	△137,383	△137,383	△686,913
	소계(b)		△137,383	△137,383	△137,383	△137,383	△137,383	△686,913
□ 총 비용(a-b)			137,383	137,383	137,383	137,383	137,383	686,913

※ 서울시 보행자전거와 제공자료

4. 덧붙이는 의견 :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규모 변동, 그 밖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가 추가될 경우 요금 수입 감소액이 달라질 수 있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 담 당 관 오희선
 추계세제팀장 김중헌
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
 ☎ 02-2180-7953
 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○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조(자전거 이용자에게 대한 지원) 제3항을 개정함에 따라 공공자전거 대여소간 자전거 불균형 해소에 기여한 자 등에 추가로 제공되는 마일리지만큼 요금 수입 감소가 발생함

2. 세부추계내역

○ 총비용(합계) ≙ 686,913천원(연평균 137,383천원)
 = 137,383천원 × 5년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지출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수입	○ 제15조(자전거 이용자에게 대한 지원)	△137,383	△137,383	△137,383	△137,383	△137,383	△686,913
	소계(b)	△137,383	△137,383	△137,383	△137,383	△137,383	△686,913
□ 총 비용(a-b)		137,383	137,383	137,383	137,383	137,383	686,913

※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제공자료

○ 마일리지 사용으로 인한 요금 수입 감면액 추계(평일 220개소, 주말 110개소 기준)

- 점유율이 12%인 '티머니 GO'에서 발생하는 1년간 마일리지 지급액(16,485천원)을 점유율 100%인 따릉이로 확대했을 경우 감면액(137,383천원)은 약 8.3배 증가된 수준으로 예상됨

따릉이 확대 시 지급액(점유율 100%)	티머니 GO 시범사업(점유율 12%)	
산출식 : 1년간 티머니 마일리지 예상 지급액 × 100 ÷ 12	티머니 마일리지 지급액(7~10월)	1년간 티머니 마일리지 예상 지급액
137,382,500원	5,495,300원	16,485,900원